

Ⅶ. 감 사 의 견 서

농협법 제 71조 제 3항에 의거 2019년 1월 21일 조합장으로부터 제출한 2018년도 사업보고서, 재무재표, 손익계산서, 잉여금처분(안)의 각 사항에 그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 함.

서기 2017년 01월 21일

비금농업협동조합

감 사 김 현 산

감 사 김 성 록

